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-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영 별표 3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”이란 「상법」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.

제4-20조제1항제10호 마목 중 “판매금액의 비중”을 “판매금액의 비중(판매금액의 비중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)로 하고, “100분의 50을”을 “100분의 25를”로 하며, 단서 및 (1)부터 (2)를 삭제한다.

제4-77조제8호 중 “제4-65조제1항”을 “제4-77조의2제1항”으로 하고, 제18호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영상통화로 법 제 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

라.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

- (1) 투자일임업자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이 40억원 이상일 것
- (2) 최근 1년 6개월 이상 (주)코스콤 홈페이지에 운용성과,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매일 공시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(영 제99조제1항제1호의 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말한다)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일 것

별표1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2 제목 중 “제2-9조제3항”을 “제2-9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별표3 제목 중 “제2-9조제1항”을 “제2-9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4 제7호다목 중 “당해 외국기업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이”를 “그 외국법인이”로 하고, “(2)부터 (5)까지”를 “별표3 제1호 라목 (2)부터 (5)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4-20조제1항제10호마목의 규정의 유효기간은 폐지한다.

제3조(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4-20조제1항제10호마목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이 고시한 날부터 체결된 계약에 따른 판매금액부터 적용한다.

② 제4-20조제1항제10호마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-8호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1조에 따른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(시행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변경 또는 갱신되는 계약은 제외한다)된 계약에 따른 판매금액은 제외한다.

제4조(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특례)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의 비중에 대하여 제4-20조제1항제10호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 사업연도에 100분의 45, 2019 사업연도에 100분의 40, 2020 사업연도에 100분의 35, 2021 사업연도에 100분의 30, 2022 사업연도에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.

<별표12의2>

계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판매금액 비중 산정 기준

$$\begin{aligned} & \text{“계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판매금액 비중”} \\ & = \frac{\text{“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} \\ & \quad \text{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으로서 제2호에서 정한 판매금액”}}{\text{“집합투자증권의 총 판매금액으로서 제1호에서 정한 판매금액”}} \end{aligned}$$

1. 해당 사업연도에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금액은 제외한 금액.
 - 가.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
 - 나.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
 - 다.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기구(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
 - 라.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.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31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중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에 한한다.
 - 마. 투자자가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가 투자권유가 이루어진 경우에 비해 낮은 집합투자증권
 - 바. 영 제7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

2. 해당 사업연도에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. 다만, 다음 각 목에 따른 판매금액은 제외한다.

가. 제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

나. 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

다.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. 다만,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업자가 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(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금액은 제외한다)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.

(1) 직전연도말 기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(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)로부터 최상위등급의 평가를 받을 것

(2)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소속 임직원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경우 참고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,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집합투자기구의 선정원칙을 공시하고, 해당 원칙에 따라 일부 집합투자기구를 선정한 후 해당 사업연도 내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,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집합투자기구의 명칭과 선정사유를 공시한 집합투자기구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-9조(금융투자업 등록 심사기준) <신 설>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제4-20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10.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</p> <p>가. ~ 라. (생 략)</p> <p>마. 매 사업연도별로 집합투자증권의 총 판매금액 중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</p>	<p>제2-9조(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 등) ① 영 별표 3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"이란 「상법」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.</p> <p>② ~ ④ (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)</p> <p>제4-20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의 판매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[자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(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, 상호간 임원 겸임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회사 등을 말한다]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한다.

(1) ~ (2)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제4-7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~ 7. (생략)

8.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(제4-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

-----판매금액의 비중(판매금액의 비중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2의2와 같다)

----- 100분의 25를-----

-----서 삭제>

<삭 제>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4-7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-----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-----

-----제4-77조의2제1항-----

를 말한다)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.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9. ~ 17. (생략)

18. 투자일임계약시 대면으로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가. ~ 나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9. ~ 17. (현행과 같음)

18. -----

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영상통화로 법 제 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

라.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

(1) 투자일임업자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이 40억원 이상일 것

(2) 최근 1년 6개월 이상 (주)코스콤 홈페이지에 운용성과,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매일 공시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(영 제99조제1항제1호의 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말한다)를 활용하는 투자일

19. (생 략)	<u>임계약일 것</u> 19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